

대구지방법원 2020. 3. 25 선고 2019나3491, 2019나3507(병합) 판결

[부당이득금 ·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1. B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혜림

변 론 종결 2020. 1. 15.

판결 선고 2020. 3. 25.

제 1 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4. 24. 선고 2017가단10095, 2017
가단13865(병합) 판결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2. 13.부터 2019. 2. 25.자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망인이 원고를 기망하여 2005. 12. 12.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08고단56), 원고는 위 사기사건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2008. 5. 14. '망인은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이하 '이 사건 배상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8초기57), 이 사건 배상명령은 2008. 5.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망인은 위 사기사건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출소 후 몇 개월이 지난 뒤인 2009. 1. 22. 췌장암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자녀들인피고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배상명령에 따른 망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70,000,000원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법정상속분(각 1/2 지분)에 따라 상속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5,000,000원(= 70,000,000원 × 1/2 지분)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배상명령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송달받은 2017. 3.경원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 및 상속개시 당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신고수리의 심판을 받았으므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1019조 제1항 전문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026조 제2호는 '상속인이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20조는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다 함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못한 것'을 의미하고,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위 법 규정에 따라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그 입증책임은 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3051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는 2017. 3. 20.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7. 4. 7.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2017느단125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고, 피고 C은 2017. 3. 24.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7. 4. 28.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2017느단139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망인이 2009. 1.

22.경 사망하였을 무렵)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7. 3.경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한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하였으므로, 그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3) 먼저 상속 개시 당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을4,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사망 당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사회보장급여를 지급받고 있었고, 합계 100,000원 이내인 소액의 예금 등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이 사건 배상명령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7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망인이 사망할 당시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4) 다음으로 피고들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여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못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을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는 E생으로 망인의 사망 당시 구민법(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따라 만 19세의 미성년자였고, 피고 C은 F생으로 망인의 사망 당시 민법 제4조에 따라 만 15세의 미성년자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위 법리에 의하면, 공동상속인인피고들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는 민법 제1020조에 따라 그의 친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위 중대한 과실 존부에 대하여 피고들이 미성년자인 때에는 피고들의 모친인 G을 기준으로, 피고들이 성년이 된 때(피고B 2009. 12. 18.이고, 피고 C은 2013. 1. 3.이다)에는 피고들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에서 채택한 증거 및 갑2 내지 9, 22, 24호증, 을1, 4, 1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모친 G과 피고들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특별한정승인신고는 효력이 있고,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① 피고들의 모친이자 망인의 배우자였던 G은 망인을 상대로 2007. 4.경 이혼소장을 접수하여 2007. 11. 14. 'G과 망인은 이혼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7드단1820), 위 판결은 2007. 12. 6. 확정되었다. 그 후 G은 H과 재혼하였다.

② G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인 2006년경 망인 및 피고들과 함께 거주하던집에서 가출하였고, 가출한 이후부터 망인 및 피고들과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위 가출 이후 피고들과 함께 거주한 적도 없다). 그리하여 G은 망인의 사망사실조차 알지못하다가 망인의 사망 이후 피고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비로소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이 G이 가출하고 망인과 이혼한 이후인 2008. 5.경 이 사건 배상명령이 확정되었고 G이 재혼까지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G이 이 사건 배상명령에 따른 망인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쉽게 알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배상명령이 내려진 2008. 5.경 당시 피고 B는 만 18세, 피고 C은 만14세의 미성년자로 피고들이 이 사건 배상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은 망인이 구속된 이후 몇 개월간 고모와 함께 살다가 부모 없는 가정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아 원룸에서 거주하면서 정부 보조금 등으로 어렵게 생활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이 사건 배상명령이 확정되고 망인이 사망한 후 수 년이 지나도록 피고들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17. 3. 9.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배상명령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위 승계집행문 등본은 2017. 3. 10. 피고 B에 게, 2017. 3. 24. 피고 C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7. 3.경 비로소 이 사건 배상명령에 따른 망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로 인하여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들은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⑤ 갑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신청에 따라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09. 5. 1. 망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결정이 내려졌으나, 위 결정은 공시송달로 이뤄져 피고들이 그 결정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 나아가 G이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피고들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망인의 상속채무 등을 자발적으로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5)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 및 피고들의 친권자 G이 망인의 사망 이후 상속재산 등을 은닉 및 처분하였고, 또한 피고들은 한정승인심판청구 당시 상속재산을 고의 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법정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의사로서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 및 그 친권자 G이 망인의 사망이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점 및 피고들이 한정승인심판청구 당시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사망 당시 기초생활수급자로 사망 직전 암 투병을 하는 등 상속재산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에서 채택한 증거와 을2,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당초 상속재산목록에 아무런 적극재산이 없는 것으로 표시하여 2017. 4. 28.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가, 2018. 2. 22.

금융감독원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신청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18. 6. 29.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2018즈기38호로 2017. 4. 28.자 심판문의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경정하는 결정을 받은 점, 이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은 보험 환급금과 예금 등 합계 100,000원이내로서 그 액수가 매우 소액인 점,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 이후 약 8년이 경과한 후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한 점, 설령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들은 여전히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562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35,000,000원(= 70,000,000원 × 1/2 지분) 및 이에 대하여 망인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5. 12. 13.부터 2019. 2.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분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3.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이준규, 판사 정인섭, 판사 최미복